

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인력 채용 공고

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, 2026.05.19

1. 채용 분야 및 요건

연번	모집분야 및 상세업무	자격 요건	인원	공통 요건
1	투자심사 (투자 발굴 및 심사, 기술 창업기업 투자연계 등)	<기본사항> 1. 학사 학위 이상 2. 투자심사 경력자 <우대사항> 이공계열 전공자	분야별 1명	<기본사항> 1.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2.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<우대사항> 1.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2. 유관 자격증 보유자 3. 영어 능통자 우대 4. AI 활용 경험 보유자 및 OA 능숙자 우대
2	기획창업 및 창업관리 (기술사업화, 창업 및 후속관리 등)	<기본사항> 학사 학위 이상 <우대사항> 1. 이공계열 전공자 2. 기술사업화 유관 업무 경력자		
3	인턴 (총무, 경영지원 및 사업 지원 등)	<기본사항> 1. 학사 학위 이상(전공 무관) 2. 신입 가능 <우대사항> 인턴 및 행정업무 경험 보유자		
4	RISE사업 전담인력 (RISE-서울형BRIDGE사업 운영지원 및 사업비 집행)	<기본사항> 1. 학사 학위 이상(전공 무관) 2. 신입 가능 <우대사항> 1. 정부 재정지원사업 경험자 2. 기술사업화 유관 업무 경력자		

2. 근무 조건

1) 채용 인원 및 유형

- 모집 분야: 분야별 상이한 채용조건을 필히 확인 후 '지원 분야' 필수 작성
- 고용 형태: 사업계약직(프로젝트계약직)

※ 내외부 조건에 의해 사업이 조기종료 되거나 또는 본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과제 종료일 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음

모집분야	채용조건	고용형태
1. 투자심사	1) 연봉: 내규에 따름(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) 2) 경력 3년 미만자의 경우 수습평가(3개월) 시행 3)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, 평가 후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	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사업계약직 (기술경영촉진사업)
2. 창업	1) 연봉: 내규에 따름(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) 2) 경력 3년 미만자의 경우 수습평가(3개월) 시행 3)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,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 ※ 최대 근무가능 기간은 채용일~사업종료일(2030.12.31)	
3. 인턴	1) 연봉: 2,700만원 2)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, 평가 후 계약 연장 결정 ※ 최대 근무가능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	
4. RISE	1) 연봉: 3,300만원 이상(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) 2) 1년 단위 근무평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※ 최대 근무가능 기간은 채용일~사업종료일(2030.2.28)	연세대학교 RISE-Y사업단 전담인력 (행정계약직)

- 2) 근무지: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
- 3) 근무시간: 9:00~18:00(주 5일 근무)
- 4) 근무시작: 채용 시 즉시
- 5) 기타 처우: 유연근무(하계/동계 일정 기간), 단체 상해보험 등

3. 채용 전형

서류 전형 → 실무진 면접 → 인사위원회 면접 → 최종 합격
(※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, 인턴 채용은 인사위원회 면접 생략)

4.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

- 1) 입사지원서 (반드시 자사양식 사용)
- 2) 졸업증명서 사본 (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)
- 3) 자격증 사본 (소지자에 한함)
- 4) 전학년 성적증명서,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(최종 합격 시 제출)
- 5) 제출방법 : E-mail 제출 (jy.kim15@yonsei.ac.kr)
※ 파일명 설정 예시: 입사지원서(지원분야, 성명).hwp
- 6) 제출기한 : 2026년 5월 29일(금)까지
- 7) 문의처: 인사·운영팀 김지윤 팀장 (☎ 02-2123-4854)

5. 기타 유의사항

- 1)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,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
- 2) 본인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- 3) 채용서류 반환 안내

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]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

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